**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**

사건번호

채 권 자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소 유 자(공 유 자)

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

위 사건에 관하여 공유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650조에 따라서 공유자지분우선매수권행사 신고를 합니다.

다 음

1. 우선매수신고대상 경매목적물

○ ○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사건의 목적물 번호 제 번 토지 시 구 동 번지 대 ㎡위 토지에 대한 지분

2. 위 항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자 은 위 목적물에 대한(지분 %의) 공유자인 바,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합니다.

3. 보증의 선제공에 관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을 금 원으로 예상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그 가격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집행관에게 년 월 일 보관하였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집행관보증금보관영수증 1통

1. 등기부등본 1통

1. 주민등록표등본 1통(공유자의 것)

년 월 일

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(인)

연락처(☎)

지방법원 귀중

☞유의사항

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